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.

제 출 자 : 총 무 위 원 회

1. 수정사유

- 0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편익을 위하여 조례안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0 고성군 관내 거주자는 우선하여 입소(안 제5조제2항)
- 0 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(안 제7조제1항)
- 0 위탁할 시는 안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.
(안 제7조제2항)

3. 본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수정조례(안)

고성군노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성군 관내 거주자는 우선하여 입소할 수 있다.

제5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7조(위탁운영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항을 신설한다.

①군수는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거 위탁할 시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 구조 문 대 비 표

현 행	수 정
<p>제5조(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) ①항 생략</p> <p>(신설)</p> <p>②군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허가 하였을 때는 입소비용 및 입소보증금을 징수하며, 월별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지침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7조(위탁운영) ①군수는 <u>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</u> 위탁운영 할 수 있다.</p> <p>②(신 설)</p>	<p>제5조(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) ①항 생략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성군 관내 거주자는 우선하여 입소 할 수 있다.</p> <p>③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제7조(위탁운영) ①_____ 노인요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또는 _____</p> <p>_____</p> <p>②제1항에 의거 위탁할 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